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
----------	------

발의연월일 : 2020. 11. 25.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등 10인

1.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목적의 명확화(안 제1조)
- 나. 업무추진비 종류 세부화 및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신설(안 제2조)
- 다.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 안 세부화(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등이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	<삭제>

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 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그 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취지와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된 집행내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